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58

제출년월일 : 2000년 2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개정이유

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

2. 주요골자

○ 시군 상호간 분쟁사항을 심의
⇒ 분쟁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기능 강화

○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변경 : 15인 이내 ⇒ 11인 이내로 간소화

○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위촉방법 변경
- 당연직 위원(5인) : 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, 건설교통국장으로 명문화
- 위원장 및 위원은 도지사가 외부인사로 임명 또는 위촉(6인)

○ 위원의 임기변경 : 1년 ⇒ 3년으로 연장

○ 위원장 직무대행 : 부위원장이 대행 ⇒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(부위원장 제도 폐지)

○ 회의 개의요건 변경 :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⇒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

3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0"을 "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1"로 하고, "지방조정위원회"를 "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, 제3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6조, 제7조, 제8조제1항, 제2항, 제9조중 "지방조정위원회"를 "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중 "심의"를 "심의·의결"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"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"을 "위원장을 포함한 11인"으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4항중 "임기는 1년"을 "임기는 3년"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(5인)은 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복지환경국장,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"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"(이하 "지방조정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"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지방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~3 (생 략)	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~3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①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 1. 도지사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6인 2.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⑤ (생 략)	**제3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(5인)은 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복지환경국장,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. ③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(삭 제) 2. (삭 제)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⑤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장의 직무등)①(생 략)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	**제4조(위원장의 직무등)**①(현행과 같음)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③ (삭 제)
제5조(회의)① (생 략)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	**제5조(회의)**① (현행과 같음)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6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**제6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수 있다.
제7조(수당 등)지방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**제7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아니하다.
제8조(회의록)①지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. 1~6 (생 략) ②지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**제8조(회의록)** ①위원회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 한다. 1~6(현행과 같음) ②위원회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한다.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**제9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---------- 위원회의 ---------- 정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40조2(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 및 구성등) ③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·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·의결한다.

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1.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
3.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⑥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조례로 정하는 당해 지방 자치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40조3(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)

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【지방자치법시행령】

제47조의4(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회의 등) ③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7조의11(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구성 및 운영) ①제47조의4 및 제47조의9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(이하"지방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②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